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384
----------	-------

발의연월일 : 2026. 8. 3.

발 의 자 : 장종태 · 이재관 · 전현희
김남준 · 소병훈 · 염태영
김영배 · 정준호 · 장경태
맹성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아동학대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그 예시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호자가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의 운전을 하면서 아동을 동승시켜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는 아동의 생명·신체를 중대한 위험에 노출시키고 정신적 불안과 공포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임에도 이를 정서적 학대행위의 예시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 최근 법원에서도 위 행위가 정신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판단도 있어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하면서 아동을 동승시켜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행위의 예시에 추가함으로써,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하고 아동의 생명과 안

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5호).

법률 제 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호 중 “노출시키는 행위”를 “노출시키는 행위,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하면서 아동을 동승시키는 행위”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금지행위)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u>노출</u> <u>시키는 행위</u> 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5. ----- ----- ----- ----- <u>노출</u> <u>시키는 행위</u> , 「도로교통법」 <u>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u> <u>태에서의 운전을 하면서 아동</u> <u>을 동승시키는 행위</u> ----- ---
6. ~ 11. (생 략)	6. ~ 11. (현행과 같음)